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564
----------	-------

발의연월일 : 2026. 4. 23.

발 의 자 : 김문수 · 박지원 · 정진욱
주철현 · 이광희 · 양부남
김우영 · 민형배 · 조계원
민홍철 · 김남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이전에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의회의원선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유권자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고 후보자에 대한 정책 및 자질 검증 기회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지방의회의원선거는 후보자의 수가 많고 유권자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정책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는바 언론기관 주최 대담·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 단서 중 “60日부터”를 “60일부터,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전 90일부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초청 대담·토론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